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84호
2.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II.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조례상 화장실 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건축물 면적을 수정함 (안 제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4. 10. 23. ~ 10. 27.(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김기덕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84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 범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현행 조례 제2조(적용범위)¹⁾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유치원을 포함하면서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을 적용범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함.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함.

는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²⁾됐기 때문에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법령체계에 따른 입법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 취지 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을 통해서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학교 1,343개교(1,341 → 1,343), 유치원 369개원(308 → 369)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표-1] 면적별 학교 및 유치원 현황³⁾

단위: 교, 원

학교					유치원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전체	바닥면적 합 (2,000㎡ 이상)	바닥면적 합 (1,000㎡ 이상)	바닥면적 합 (1,000㎡ 미만)		전체	바닥면적 합 (2,000㎡ 이상)	바닥면적 합 (1,000㎡ 이상)	바닥면적 합 (1,000㎡ 미만)
975	372	366	2	4 ^{주1)}	291	442	17	61	364

주1) 학교(사립) 1천제곱미터 미만: 4교(특수학교)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상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1. 22.] [대통령령 제28439호, 2017. 11. 21., 일부개정]

3)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및 학교(유치원)알리미 자료 참고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